**IT공과대학 선거시행 세칙**

**전 문**

한성대학교는 본 대학교의 건학정신인 진리와 지선을 바탕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인으로서 진리 탐구와 창조적인 대학문화를 창당하고 민주시민의 자질 배영과 인격함양을 그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한다. 따라서 한성대학교는 이러한 근본이념의 실현을 위하 외부의 어떠한 압력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시대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에 IT공과대학에 소속된 4개 학부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본 IT공과대학 선거시행 세칙을 제정 및 개정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원칙이 존재하는 IT공과대학 소속 4개 학부 대표자 선거를 진행함에 본 세칙의 목적이 있다. 21년도에 발의된 선거시행 세칙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IT공과대학 학생회장단 및 각 과 대의원 및 상임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2022년 10월 27일 IT공과대학 상임위원 회의를 통해 수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총칙**

**제 1 조 (원칙)**

1.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제 2 조 (목적)**

1. 선거시행세칙은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1. 본 선거시행세칙은 한성대학교 IT공과대학에 속한 학생회장단(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 정ㆍ부학생회장)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선거 운동본부대표자와의 합의에 의해, 또는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 2 장 학 부 학 생 회 장**

**제 1 절 총칙**

**제 4 조 (원칙)**

1. 각 학부 정ㆍ부학생회장(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은 각 학부의 대표로서 지위를 가진다.

2. IT공과대학 소속 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의 경우 정 학생회장과 부 학생회장이 존재하고, 정 학생회장은 1명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컴퓨터공학부, IT 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의 경우 부 학생회장은 1명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단, 기계전자공학부는 부 학생회장을 2명으로 인원으로 제한한다.

3. IT공과대학 소속 각 학부 정ㆍ부학생회장(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은 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의 장을 일컫는다.

4. IT공과대학 내 각 학부 정ㆍ부학생회장(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을 선출함에 있어 반드시 IT공과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한다.

5. 각 학부 정ㆍ부학생회장(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은 선거를 통한 당선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6.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7. 본 규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에도 없는 사항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반수이상 참석과 출석인원의 2/3민주적 결과로 시행한다.

8.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불가할 경우, 각 선거 운동본부대표의 합의에 의해 시행한다.

**제 3 장 선 거 권 과 피 선 거 권**

**제 1 절 총칙**

**제 5 조 (선거권)**

1. 선거권은 각 학부학생들과 학부로부터 파생된 트랙을 제1트랙으로 하는 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일 공고일 현재 (투표일 10일전) 등록 확인된 재학생으로 한다.

**제 6 조 (피선거권)**

1. IT공과대학 학생회 및 각 과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의 규정으로 주어진다.

2. 등록학기 전체평점이 1.88을 넘는자

3. 각 학부 정ㆍ부학생회장(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 정ㆍ부학생회장) :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회의 회원 5%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등록학기 전체평점이 1.88을 넘고, 입후보 당시 현재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4.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제 2 절 후보자 등록 절차**

**제 7 조 (후보자 등록)**

1. IT공과대학 학부 정ㆍ부학생회장(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 정ㆍ부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각 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입후보자 등록원서(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3. 학부 정ㆍ부학생회장(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 정ㆍ부학생회장))은 5% 이상의 추천서

4. 재학증명서

5. 기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선거 본부 위원장 및 위원 명단

,투개표인 참관인 명단, 성적증명서 등)

6. 공탁금 1인당 10,000원

7. 입후보자들은 등록 마감일 15시까지 전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8. 사퇴서 (입후보자가 현재 본교 학생회 및 공개기구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

-해당기구의 직인이 찍힌 ‘사퇴서’를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9. 학생회비 납부 증명서

10.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할 때는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자격요건)**

1. 각 학부 학생들과 학부로부터 파생된 트랙을 제 1 트랙으로 하는 자.(해당 학기 시작일 기준)

2. 전체평점이 1.88 이상이 되는 자

3.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에 충족하는 자.

4. 입 후보 당시 현재 재학 중인 자

5.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6. 기계전자공학부의 부 학생회장의 경우 2명의 인원으로 제한되며, 2명은 학과로 파생된 제 1트랙이 서로 달라야 한다.

**제 4 장 선 거**

**제 1 절 총칙**

**제 9 조 (선거일)**

1. IT공과대학 선거는 매 학년도 10월 ~ 12월 종강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체적인 단선관위 발의 일정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4. 9조 2항과 3항의 단선관위 발의일정과 선거일정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 마감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선거일정 중 유세기간은 최소3일, 최대 2주로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따른다.

**제 10 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로 규정한다.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 또는 언동 포함)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유세기간 시작일 자정부터 투표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2) 구임 IT공과대학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

3) 임기를 마치지 않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또는 학부 정ㆍ부학생회장(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 정ㆍ부학생회장)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본다.)

4) 공개적인 학생회 집행국장 및 부장

5) 본교의 재학생이 아닌 자

6) 단, 등록마감일까지 사임한 자는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선거관리)**

1. 입후보자의 기호는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와의 합의하에 다양하게 지정 할 수 있으며, 공통된 기호를 사용한다. 단, 기호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2. 모든 선전 게시물 관련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3. 자보의 경우 자체 제거일을 써야하며, 선거유세기간 동안은 각 동아리 및 과 행사자보 및 포스터의 이동을 제의한다.

**제 12 조 (금지사항)**

1.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합의하지 아니한 보도 및 방송,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확성기, 녹음기, 불법현수막 등) 사용,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지 아니한 유인물의 배포나 선전 게시물 부착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2. 학교 밖 선전 게시물 및 선거에 대한 홍보물 부착은 금지한다.

3. 상대 후보자의 선전 게시물 위에 선거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다.

4. 상대 후보자의 선전 게시물을 훼손시킬 수 없다.

7. 제 1조, 제 2조 항에 근거하여 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투표 전날 자정을 기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단, 투표 독려는 가능하다.)

7. 투표 당일, 투표 참관인을 제외한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소 기준 반경 5M 이내로의 접근을 금지한다.

**제 5 장 I T 공 과 대 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제 1 절 총칙**

**제 13 조 (지위)**

1. IT공과대학 선거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하여 진행, 조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최고 권력기구이다.

**제 14 조 (목적)**

1. IT공과대학에 속한 학부 정ㆍ부학생회장(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 정ㆍ부학생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루는 데에 있다.

2. IT공과대학에 속한 학부 정ㆍ부학생회장(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 정ㆍ부학생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고, 대중의 선거참여를 이루어 낸다.

**제 15 조 (업무 및 권한)**

1.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을 기획, 집행한다.

2. 선거를 올바른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3. 선거시행세칙과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합의한 선거방식에 대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공정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사례가 있을 시,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5.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동안 다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 16 조 (구성)**

1.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시작 5일 전에 구성을 발의한다.

2.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을 각과 학생회장단과 상임위원, 대의원, 해당단과대학 국장 및 국원을 포함한 30인 이하로 한다.

3.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당 년도 IT공과대학 학생회장, 부재 시 부학생회장으로 한다.(둘 다 부재시,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

**제 17 조 (소집 및 의결)**

1.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제 18 조 (금지사항)**

1.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선 거 운 동 본 부**

**제 1 절 총칙**

**제 19 조 (정의)**

1.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기간동안 단기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제 20 조 (역할 및 목적)**

1. 선거유세, 투표 독려 등 세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정, 부학생회장 후보 및 학부 정ㆍ부학생회장(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 정ㆍ부학생회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21 조 (자격)**

1. 당해 IT공과대학에 등록한 회원으로, 각 학부 학생회나 단과대학 학생회 또는 중앙기구에 속해 있지 않아야 한다.

**제 22 조 (인원 제한)**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과의 합의 하에 인원의 제한을 정한다.

**제 23 조 (활동 기간)**

후보자 등록을 함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며, 투표 마감 시 까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4 조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

1.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은 후보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한다.
3. 선거운동본부원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이를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변동사항은 매일 18시까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보고한 선거운동본부원 변동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단, 선거운동본부장은 제외한다.
4. IT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5. 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된 기록이 있는 자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6. 선거운동본부원이 두 개의 선거운동본부에 이중으로 등록되었을 때는 어떤 선거운동본부의 잘못인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7.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단,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변심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조 (의무)

1. 선거운동 본부는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관련 규정, 이 세칙 및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합의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한다.
3.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절 선거운동본부장**

**제 26 조 (자격)**

1. 선거운동본부를 책임지고 대표하는 자이다. 선거운동본부장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선거 운동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한 명을 원칙으로 하고, 후보자에 의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2. 선거운동본부 내, 협의 하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자격을 박탈당하였을 경우 선거운동본부는 새로운 선거운동본부장을 지정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 27 조 (역할 및 지위)**

1. 선거운동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책임진다.

2. 선거운동본부의 대표로서, 선거운동본부 그리고 후보자들의 이의 또는 의견을 대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제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7 장 참 관 인**

**제 1 절 총칙**

**제 28 조 (투, 개표 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개표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개표장에 배치되어 개표 진행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단, 인원수는 각 선거운동본부 당 1명으로 제한한다.)

3. 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이 겸임한다.

**제 29 조 (자격)**

1. 투, 개표참관인은 후보자 등록 서류에 명시된 자여야 한다.

**제 30 조 (이의제기)**

1.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개표 상황을 참관, 감독하여 투개표 상황에 대하여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31 조 (전제조건)**

1.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타 후보 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했을 때,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까지 모든 투표소의 참관자격과 투표 독려 활동을 포함한 모든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2.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투표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투표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할 경우

3) 기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제 2 절 기타**

**제 32 조 (기타사항)**

1. 특정후보 측의 참관인 부재 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보 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한다.

2. 참관인은 투표당일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표함을 운반한다.

3.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참관 아래 선거운동본부장이 입회할 수 있다.

**제 8 장 이 의 제 기**

**제 1 절 총칙**

**제 33 조 (이의제기권자)**

1.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장만이 유세시작부터 투표마감까지 할 수 있다.

2.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의제기의 처리)**

1.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 이의제기에 대한 의결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3. 찬성과 반대가 동률이라면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에 결정에 따른다.

**제 9 장 징 계**

**제 1 절 총칙**

**제 35 조 (정의)**

1.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36 조 (징계의 종류)**

1.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 시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제 37 조 (징계의 통보)**

1. 시정명령과 주의는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2. 시정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후보가 이를 1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3.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공개사과문을 우촌관 진리관 사이 (이하 우진사)와 낙산의 메아리에 게시한다.

제 38 조 (시정명령)

각 호의 사항에 해당 할 때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본부에 시정명령을 구두로 통보한다.

1.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2. 선거운동 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때
3. 대자보의 부착장소, 현수막의 게시장소, 개수를 어길 때
4. 게시물, 선전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때
5. 선거운동 본부복의 심의결과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6. 이의제기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7.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이 새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이 요구될 때

제 39 조 (경고)

1. 각 호의 사항에 해당 할 때,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경고를 구두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1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두 번 받았을 때
3. 선거운동본부원 이외의인물이 선거운동을 했을 때
4.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5. 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6.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 유인물을 게시, 배포할 때
7. 게시물, 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8.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
9. 특정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때
10. 선거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본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때
11. 선거에 관하여 연설을 방해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 할 때
12.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물,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 할 때
13.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4.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5.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때
16.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제 40 조 (징계의 의결)**

징계는 즉시 통보가 가능하며, 기타 징계의 의결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제 10 장 투 표**

**제 1 절 총칙**

**제 41 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1. 투표는 2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하에 1일을 추가할 수 있다. 단,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2/3의 동의로 가결한다.

2. 투표 연장 기간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하에 정한다.

3. 투표시간은 09:00부터 22:30까지로 한다.

4. 투표 마감시간이 지났을 때, 투표를 위해 대기중인 인원은 투표를 할 수 있다.

**제 42 조 (투표장소)**

1. 투표 장소는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소 3곳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곳을 추가로 정하여 투표소를 둘 수 있다.

**제 43 조 (신분확인)**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신분을 확인하여야 투표를 할 수 있다.

1.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2. 신분증은 다음의 규정된 신분증으로 한다.

- 주민등록증,학생증,운전면허증,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인된 신분증으로 한다.

**제 44 조 (투표절차)**

1. 투표절차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의한다.

2.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분확인

3. 선거인 명부 확인

4. 투표자의 서명

5. 투표용지 배부

6. 투표

**제 45 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1.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원은 투표소 기준 반경 5M 이내로 접근 할 수 없다.

**제 11 장 개 표**

**제 1 절 총칙**

**제 46 조 (개표)**

1. 개표사무는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2. 개표는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3. 표의 유, 무효의 기준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4. 개표 장소는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과 개표 참관인만이 입장 할 수 있다.

**제 47 조 (개표소)**

1. 개표소는 학교 내의 장소로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 개표소에서의 질서유지는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3. 후보자는 개표 종료 시까지 학내에 잔류하고 있어야한다.

4. 개표 장소에는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과 개표 참관인만이 입장할 수 있다.

**제 48 조 (개표의 기준)**

1. 개표의 기준은 투표용지의 수, 꼬리표, 선거인명부 순으로 한다.

2. 투표용지의 수와 꼬리표의 차이는 전체투표오차라 한다.

**제 12 장 당 선**

**제 1 절 총칙**

**제 49 조 (당선의 기준)**

1. 당선 기준은 단선과 경선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단선인 경우, 총 재적인원 과반 수 이상의 투표, 투표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경선인 경우, 총 재적인원 과반 수 이상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와의 득표차이는 전체투표의 오차를 초과하여야 한다.

(초과하지 못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무효표는 전체투표의 오차에 포함한다.)

**제 50 조 (당선공고)**

1.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즉시 공고한다.

**제 13 장 재 투 표 및 재 선 거**

**제 1 절 총칙**

**제 51 조 (재투표)**

1.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가 전체투표오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2. 재투표 실시일정에 관한 사항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단,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재선거의 시행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 52 조 (이의제기)**

1.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48시간 이내에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과의 서면을 통해 신청한다.

3. 이의신청의 결과는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후,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 과반 수 이상 참석,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3 조 (선거무효)**

1. 선거부정이 인정될 때와 투표율이 미달되었을 때 또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에 대한 소송이 있을 때에는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세칙위반 여부를 즉시 심의하고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2/3이상 출석과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선거 전에는 입후보 등록의 자동 취소와 당선 후라도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가 된다.

**제 54 조 (재선거 후보자 등록 및 선거)**

1. 재선거의 후보자 등록 및 선거에 따른 제반 사항은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4 장 보 궐 선 거**

**제 1 절 총칙**

**제 55 조 (재선거)**

1. 아래 두 가지 항을 재선거라 정의한다.

2. 선거가 투표율 미달 또는 기타 원인으로 12월 보궐선거를 시행하였으나, 이 역시 당선이 되지 않았을 때, 다음 년도 3월 중에 시행하는 선거이다.

3.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 3월 중에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 시행하는 선거이다.

4. 단,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재선거의 시행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 56 조 (재 보궐 선거)**

1. 다음 각 항에 해당 될 시에는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이내에 재 보궐 선거를 공고하고 공고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보궐 선거에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 재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3. 단, IT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재 보궐 선거의 시행여부를 정할 수 있다.